



국내 자원순환 규제 변화 예고

2023. 6. 환경부는 순환경제의 산업계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뒤이어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2024. 1. 1. 시행). 신 법령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절한 처리에 중점을 둔 구 법령에서 나아가 과거부터 존재한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 구축,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 확대, 순환경제 부문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국내 자원순환 규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기본법이므로, 향후 국내 자원순환 규제에 관한 하위 법령과 정책도 제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배경

자원순환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은 과거부터 국내에서 논의되어왔으며,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으로 구체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배출자로부터 배출되는 모든 불용물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간주하는 광의의 폐기물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외(유럽연합의 신순환경제 행동계획, 일본의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중국의 순환경제촉진법, 독일의 순환경제법 등)의 기준에서 순환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국내법으로는 모두 규제의 대상인 폐기물이 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순환이용 가능한 순환자원과 처분해야 할 불용물인 폐기물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만을 폐기물로 간주하는 협의의 폐기물 개념으로 규제의 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방향 변경은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포괄하는 기존의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고,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입법예고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포함한 최근 국내 자원순환 규제의 주요 동향은, 위와 같은 협의의 폐기물 개념 도입 및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입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최근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과대포장 기준법 시행, 그리고 재생원료 인증사업 추진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국내 자원순환 규제 동향

가.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환경부는 2023. 11. 7.자 보도자료를 통해 비닐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예를 들어, 생분해성 봉투 등) 사용 문화 정착,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시장 성장 촉진, 1회용 종이컵의 재활용률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괄적 일회용품 규제에서 나아가 순환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질인 경우 일회용품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한 것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기초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는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부터 미세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플라스틱 물질의 특성에 맞추어 규제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내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또한 이러한 기초에 맞추어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구분하고 각 지원 또는 규제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플라스틱 전략]

구분	주요내용
바이오기반, 생분해성,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화석연료 기반의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 기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사용 촉진
플라스틱 비닐봉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비닐봉지 지침 마련 : 국가 차원의 저감목표 설정, 사용제한 또는 경제적 조치 도입 등 2020년부터 회원국은 경량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연간 소비량 데이터 보고
일회용 플라스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지침에 따라 2021년부터 EU역내에서 면봉, 음식 용기, 음료컵, 플라스틱 비닐 등 10개 품목에 대한 판매를 금지 설계요건 도입, 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 원료나 폐기 및 재활용 정보 라벨링 도입, EPR 확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플라스틱병 재활용 수거율 2025년 77% -> 2029년 90% 목표 (ii) 2025년 PET 음료수별 25% 재생 플라스틱 사용 (iii) 2030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재생 플라스틱 30% 사용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종합 지침 부재 → 표준, 인증, 규제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 진행
플라스틱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지침 개정(플라스틱 봉투 소비 저감조치 추가, 포장재에 대한 EPR 필수 설정 등)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은 생산자책임제도 도입
플라스틱세(稅)	2021년 1월부터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kg당 0.8유로 세금 부과

자료: European Commission, 유진투자증권 재인용

나. 과대포장 기준법 4월 시행

환경부는 2024. 4.부터 택배 등의 포장공간 비율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품 포장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은 과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하던 포장공간 비율에 관한 내용과 유사하며, 구체적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1. 단위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 (decoration cake)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나.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다.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라.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마.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바.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사.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2.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그러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조(유통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은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포장재의 표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대포장기준법 또한 그에 맞추어 과대포장의 규제와 더불어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유통포장재 사용에 관한 지원을 새로운 내용으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재생원료 인증 시험사업 추진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인증할 것을 요구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등 주요 원료의 재활용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예정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페트병 생산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국제표준을 준용한 국내 인증을 마련하고, 냉장고, TV, 사운드바, 세탁기, 전기차배터리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재생원료(플라스틱, 금속)의 재생원료 인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원료 인증이 도입되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의 인정을 일괄 지정 및 고시하여 순환자원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순환자원의 사용 및 유통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사점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절한 처리에서 나아가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기존의 국내 자원순환 규제 또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하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에 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우 ESG센터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ESG Tot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SG 고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ESG 정책 및 규제환경에서 화우ESG센터는 고객의 신뢰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조준오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80

E. jojo@yoonyang.com

김정남

수석전문위원

T. (+82) 2 6003 8559

E. jnkim@yoonyang.com

김연각

변호사

T. (+82) 2 6003 8718

E. ygkim@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